

남양주시-기업은행 중소기업 동행 금융지원 협약 체결안

의안 번호	426
----------	-----

제 출 일 : 2024. 4. 4.

제 출 자 : 남양주시장

1. 업무협약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업무협약 추진 근거
 - 남양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 남양주시 기업 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경영지원)
- 업무협약 추진 필요성
 - 경기침체 장기화 등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 우리시 사업으로 2024년도 상반기, 하반기에 시행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이 있으나, 수시로 발생하는 기업 운전자금 수요에 대응할 필요
 - 이에 탄력적 공급이 가능한 저리의 새로운 운전자금 정책 지원이 필요

2. 업무협약 내용

- 동행 금융지원 협약대출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 기업은행, 보증기관의 1.2% 보증 수수료 지원
- “시”의 분기별 이차보전(사후정산)
- 기타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시”가 요구하는 사항

3. 업무협약 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

4. 협약기관 선정방식

- 기업은행의 제안 및 간담회 : 2024. 2.
- 기업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기업은행의 특수성 및 중소기업육성 자금 여신 점유율을 고려하여 기업은행의 제안 수락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사업 협약은행 별 이차보전금 지급액】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계	농협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씨티은행
2021년	303.8	31.28	18.22	66.62	117.63 (38.7%)	28.62	31.14	10.29
2022년	320.8 5	32.90	27.39	58.75	139.76 (43.5%)	27.15	30.19	4.71
2023년	356.7 8	42.49	38.77	60.71	146.27 (40.99%)	22.36	44.36	1.82

5.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용자연도	용자금액	이차보전율	이차보전금
합계	300억원		6억원
2024년	100억원	2%	2억원(100억원 × 2%)
2025년	100억원		2억원(100억원 × 2%)
2026년	100억원		2억원(100억원 × 2%)

6. 기대효과

- 담보력 부족한 저신용 기업에 대한 용자 지원이 가능
- 보증서 발급 수수료 지원, 신용보완 효과가 저신용 한계기업에 큼

남양주시-IBK기업은행

중소기업 동행지원 협약대출 업무협약서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과 IBK기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은 「남양주시 중소기업 동행지원 업무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기로 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양주시 소재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시”의 보전금을 기반으로 “은행”이 대출 재원을 마련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력의 범위)

“시”와 “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과 중소기업 지원 제도가 확대, 발전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며 긴밀히 협력하기로 한다.

제3조 (지원대상 및 자금의 용자)

- ① 본 협약에 따른 지원대상은 “시”의 추천을 받은 남양주시 관내 본사 또는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으로 하며, “은행”은 “시”의 이차지원금(3년간 총 6억원)을 기반으로 3년간 총 300억원의 대출한도를 조성하고, 동행지원협약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다.
- ② “은행”은 지원 중소기업에 대해 산정한 적용여신금리에서 2.0%를 자동감면하여 대출하며, 내규에 따라 대출 금리를 추가 감면할 수 있다.
- ③ 대출한도가 소진되거나 협약이 종료되는 경우 “은행”은 신규 대출을 중단하되, 대출한도 소진일 또는 협약 종료일 이전의 대출에 대하여는 지원을 유지한다.
- ④ 대출지원 여부는 “은행”의 책임과 판단 하에 결정하고, “시”는 협약보증서 발급, 기업의 이차불입, 대출금 연체, 미상환, 원리금의 회수 방법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⑤ 제3조 제4항의 동행지원 협약보증서 발행에 관하여는 “은행”과 보증기관 간의 협약에 따르되, “은행”은 최대 연 1.2%에 해당하는 보증료 등 금융비용을 지원한다.
- ⑥ 자금의 용도는 운전자금으로 한하며 동일기업에 대한 용자한도액은 최대 3억원으로 한다.
- ⑦ 본 협약에 따른 대출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이차보전기간은 대출기간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 대출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경우, 대출기간 포함 최대 3년까지 대출 연장이 가능하며 연장된 기간은 이차보전기간에 포함한다. 이 경우, 연 1.2%에 해당하는 보증 수수료는 기업은행과 보증기관이 지원한다.

제4조 (이자보전)

- ① 제3조 제2항의 금리 2.0%는 “시”가 이차보전한다.
- ② “시”가 “은행”에게 보전하는 이차보전기간은 대출일로부터 최대 1년으로하며, 대출 받은 업체에서 조기 중도상환 시에는 상환일 전일까지로 한다.
- ③ “은행”은 매 분기 익월 15일까지 “시”에게 이차보전금을 청구한다. 다만, 4/4 분기는 11월30일 기준 익월 10일까지 청구하고, 12월분 또는 나머지 잔여분에 대하여는 익년 1/4분기 이차보전금 청구 시 포함 신청한다.
- ④ “시”는 용자받은 업체의 원리금 상환분에 대해서는 이차보전을 하지 아니한다.
- ⑤ “시”는 용자받은 업체 중 타 사·도이전, 휴·폐업사유 발생 시 사유 발생일 전일까지 이차보전금을 지급한다. 단, 휴·폐업 업체 중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는 업체는 대출 만기일 전일까지 이차보전금을 지급한다.
- ⑥ 과오지급된 이차보전금에 대해서는 “은행”이 반납하거나 “시”가 이차보전금 지급 시 차감하며, “시”가 이차보전을 중지하도록 통보한 업체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 ⑦ “시”는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청구받은 이차보전금을 매분기 그 청구월의 익월 15일까지 “은행”에 지급한다.

제5조 (통지 의무)

“은행”은 기업에 대한 용자실행과 기 용자 받은 업체의 중도상환에 대한 현황 등을 매분기 말 현재로 작성하여 익월 15일까지 “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사후관리)

- ① 지원기업이 “시”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제외대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은행”은 그 사실을 “시”에게 지체없이 통지하며, 사유 발생일로부터 금리 감면을 중단하기로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의 금리감면 보전금이 “은행”에 지급된 경우에는 “시”는 “은행”에게 그 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시”는 “은행”에 이 협약에 관한 보전금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은행”은 이에 지체 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 ④ “시”는 협약 종료 시 대출한도 미소진에 따른 잔여 보전금은 “은행”에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

제7조 (부당행위 금지)

“은행”은 이 협약에 따른 대출과정에서 기업에 대하여 구속성 예금강요나 권유 등 일체의 부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 (기타 지원 프로그램)

“은행”은 중소기업에 컨설팅, I-ONE JOB 등 자체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제9조(비밀유지)

“시”와 “은행”은 상대방의 서면동의 없이는 본 협약과 관련한 업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정보의 공개가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제9조 (협약의 효력 및 변경)

- ① 본 협약의 효력은 “시”와 “은행”이 서명 또는 날인한 날로부터 발생하고, 그 유효기간은 2000. 0. 00.까지로 한다.
- ② 본 협약은 어느 당사자가 유효기간 만료일 20일전까지 서면에 의하여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1년 단위로 2000. 0. 00.까지 자동연장 되는 것으로 한다.
- ③ 본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당사자 간의 상호합의를 통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 (기타)

본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협약서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의 합의에 따르며,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관련 법령(고시 및 공고 포함) 및 일반적인 관례에 의하여 해결한다.

본 협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시”과 “은행”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4년 4월 00일



남양주시장 주 광 덕 (인)



은행장 김 성 태 (인)